외교통상부 출력하기 닫기

제목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회 통과

담당부서	외교부 > 개발협력국 > 개발정책과	조회수	89
게시일	2009-12-29 18:44		
부서명	외교부 > 개발협력국 > 개발정책과		
전화번호	2100-833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제09-737호 문의: 개발정책과(2100-8339) 배포일시 2009.12.29(화)

제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회 통과

1.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인「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12.29(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ㅇ 동 법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정의, 목적,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현재 무상·유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외원조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및 주관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

2. 동 법안은 제18대 국회 개회 이후 5명 의원(송민순, 진영, 김부겸, 배영식 및 이미경의원)이 발의하였던 공적개발원조(ODA) 기본법 관련 법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통합, 조정한 대체안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 18대 국회 개회이후 5개 의원발의 법안 외통위 상정
- 11.2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체안) 의결
- 12.28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
- 12.29 국회 본회의 통과

3. 금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으로 그간 30여개 부처(기관)에 의해 분산, 추진되어 왔던 우리 ODA 집행체제의 비효율성 및 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정책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무상원조,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를 각각 주관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무상·유상원조를 전체 심의·조정

4. 또한 금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은 지난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함께 앞으로 우리 ODA를 선진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동 법은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법의 시행령(대통령령)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첨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주요 내용 / 끝/